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)」 개정(법률 제 20670 호, 2025. 1. 21. 공포)으로 교육감에게 매년 시·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고,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게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, 「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 중 예방센터 지정 기간 및 변경·취소에 관한 법령상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.

또한,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쌍방신고 및 분쟁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리조치의 예외조건을 추가하고, 변화하는 학교 환경에 맞추어 즉시 분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행계획의 공포 방법 및 예방대책의 제출 시기를 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사항 구체화(안 제2조, 제6조의2)
- 나. 「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정안 중 학교 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간·변경·취소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(안 제2조의4)
- 다.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를 분리조치 예외조건으로 추가하여 학교의 교육적 기능 강화하고 즉시 분리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(안 제17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제2조의2, 제2조의3 및 제2조의4로 하고,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시행계획의 공표 등) ① 교육감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에 따른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해당 시·도와 시·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(중전의 제2조) 중 “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4항”을 “법 제6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의4(중전의 제2조의3)제3항 중 “내용”을 “내용 및 지정 기간·변경·취소 등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예방대책의 제출 등) ①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

전년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라 한다)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예방대책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

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는 기간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(시행계획의 공표 등) ① 교</u> <u>육감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</u> <u>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</u> <u>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년</u> <u>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</u> <u>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</u> <u>이라 한다)에 따른 추진실적과</u> <u>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해당 시</u> <u>· 도와 시 · 도 교육청의 인터넷</u> <u>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누구든지</u> <u>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표하</u> <u>여야 한다.</u> <u>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표</u> <u>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</u> <u>변경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다</u> <u>시 공표하여야 한다.</u>
<u>제2조(성과 평가 및 공표) 「학교</u> <u>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</u> <u>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</u> <u>조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</u> <u>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「초 ·</u> <u>중등교육법」 제9조제2항에 따</u> <u>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</u> <u>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, 이를</u>	<u>제2조의2(성과 평가 및 공표) 법</u> <u>제6조제6항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

공표하여야 한다.

제2조의2 (생 략)

제2조의3(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
· 운영 등) ①·② (생 략)

③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
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
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④ ~ ⑦ (생 략)

<신 설>

제17조의2(가해자와 피해학생 분
리 조치의 예외) 법 제16조제1
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

제2조의3 (현행 제2조의2와 같음)

제2조의4(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
· 운영 등) ①·② (현행과 같
음)

③ -----
----- 내용 및
지정 기간·변경·취소 등에 관
한 사항-----.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예방대책의 제출 등) ①

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
에 따라 전년도 지역의 학교폭
력 예방대책(이하 “예방대책”이
라 한다)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
음 연도 예방대책을 다음 연도
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
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
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대
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
예방대책을 지체없이 교육부장
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2(가해자와 피해학생 분
리 조치의 예외) ① -----

“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”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-----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</u> <u>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는 기간 및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	
연 락 처	(044) 203 - 6546